



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규정번호 | 1-0-2 |
| 제정일자 | 2008.03.01 |
| 개정일자 | 2013.06.01 |
| 개정번호 | Ver.1 |
| 총페이지 | 2 |

전부개정 2008년 3월 1일
일부개정 2013년 6월 1일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동양학원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동양미래대학교 (이하 ‘본 대학’ 이라 한다)의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06.01.>

제2조(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자) 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교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
 2. 신규임용 시 부교수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
- ② 당해 연도에 임용할 정년보장교원의 수는 정관 제3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정년 보장 교원의 정수 및 대학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한다.<개정 2013.06.01.>

제3조(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절차) 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4조(정년보장교원 임용기준) 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은 현 직급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.

1. 교수업적평가의 매 학년도별 등위 백분율의 평균이 상위 50% 이내<개정 2013.06.01.>
 2.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대한 학부 종합평가서에서 찬성 의견서 취득
 3. SCI급 및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된 학회지급 이상의 학술지에 책임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하거나 대학(또는 산학협력단) 명의로 1억원 이상의 연구과제를 과제책임자로 수탁<개정 2013.06.01.>
 4. 실적평가 세부 기준에 의한 인정점수가 일정점수 이상. 단, 총장은 특별한 공적 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학발전 부문의 실적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<개정 2013.06.01.>
- ② 당해 연도에 임용할 정년보장교원은 제1항을 만족하는 교원 가운데 교육부문 및 대학발전 부문의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제5조(정년보장교원의 임용 제청) 제4조를 충족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제 절차를 통과한 교원으로서 제2조제2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임용 제청을 한다.<개정 2013.06.01.>

제6조(제출서류) 제2조가 규정하는 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자로서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을 원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년보장교원 임용예정일 4개월 이전에 총장에게 제

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06.01.>

1. 정년보장교원 임용신청서
2. 1호의 평가에 필요한 실적물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7조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)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4조제1항을 심사한다.

- ② 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적의 우수성을 심사한다.
- ③ 실적물에 대한 질적 심사 및 정성적 심사를 한다.

제8조(학부인사위원회) 정년보장임용대상자의 제4조제1항제2호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기명으로 평가한다.

1. 학부인사위원회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하며 사안 종결 시 해체한다.
2. 학부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부장(본인이 피심사자인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)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단, 전임교원이 9인 미만인 학부는 피심사자를 제외한 전임교원 전원으로 학부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.<개정 2013.06.01.>
3. 학부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대한 학부종합평가서를 제출한다.

제9조(정년보장교원 임용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교원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2.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당연 면직 해당자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, 교육공무원법,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 폐기한다.
- ② 종전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